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0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반기검토보고서”를 “반기검토보고서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로 한다.

제17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최근”을 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및”으로, “5”를 “1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,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자기주식 취득,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70조(반기보고서 ·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① · ② (생략)		제170조(반기보고서 ·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		③ ----- ----- -----.		
1.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<u>반기검토보고서</u> . 다만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		1. ----- ----- <u>반기검토보고서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
2. (생략)		2. (현행과 같음)		
제176조의2(자기주식의 취득 · 처분기준) ① ~ ⑤ (생략)		제176조의2(자기주식의 취득 · 처분기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주권상장법인은 <u>최근</u>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		⑥ ----- <u>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및</u> ----- ----- 1 ----- ----- ----- -----		

을 받아야 한다. 1. ~ 2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	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4. <u>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</u> <u>주식 취득, 소각 및 처분 계획</u> <u>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자기주</u> <u>식 취득, 소각 및 처분 현황의</u> <u>비교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91